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630호)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6. 5
 나. 회 부 일 자 : 2000. 6. 5
 다. 상 정 일 자 : 2000. 6. 12
 라. 의 결 일 자 : 2000. 6. 13

고 성 군 수

총무위원회 상정

총무위원회 수정의결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0. 예산안	기정예산안	금회추경안	%
합 계	119,440,322	106,702,849	12,737,473	11.94
일 반 회 계	110,230,532	98,395,533	11,834,999	12.03
특 별 회 계	9,209,790	8,307,316	902,474	10.9
상 수 도 사 업	2,641,960	1,935,216	706,744	36.5
주 택 사 업	24,383	24,383	0	0.0
의료보호기금 운영	3,615,000	3,615,000	0	0.0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628,790	628,790	0	0.0
농공단지조성사업	782,486	738,100	44,386	6.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1,117,171	965,827	151,344	15.7
중소기업육성기금 운 용	400,000	400,000	0	0.0

3.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0.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금회추경안	
합 계	110,230,532	100.0	98,395,533	100.0	11,834,999	
세	지방세	9,455,000	8.6	8,755,000	8.9	700,000
	세외수입	11,784,073	10.7	8,639,045	8.8	3,145,028
	경상적세외수입	3,749,700	(3.4)	4,316,165	(4.4)	△566,465
	임시적세외수입	8,034,373	(7.3)	4,322,880	(4.4)	3,711,493
입	지방교부금	35,070,000	31.8	33,939,387	34.5	1,130,613
	지방양여금	11,225,466	10.2	9,429,897	9.6	1,795,569
	조정교부금	1,910,000	1.7	500,000	0.5	1,410,000
	보조금	36,764,993	33.4	33,111,204	33.7	3,653,789
	국고보조금	22,169,361	(20.2)	21,033,891	(21.4)	1,135,470
	도비보조금	14,595,632	(13.2)	12,077,313	(12.3)	2,518,319
	지방채	4,021,000	3.6	4,021,000	4.1	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0.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금회추경안	
합 계	110,230,532	100.0	98,395,533	100.0	11,834,999	
세	경상예산	29,005,410	26.3	28,443,287	28.9	562,123
	인건비	14,119,481	(12.8)	14,123,007	(14.4)	△3,526
	경상적경비	14,885,929	(13.5)	14,320,280	(14.6)	565,649
	사업예산	76,173,867	69.1	64,673,689	65.7	11,500,178
	보조사업	64,614,318	(58.6)	55,276,376	(56.2)	9,337,942
출	자체사업	11,559,549	(10.5)	9,397,313	(9.6)	2,162,236
	채무상환	2,068,680	1.9	1,868,680	1.9	200,000
	지방채상환	2,068,680	(1.9)	1,868,680	(1.9)	200,000
	예비비등	2,982,575	2.7	3,409,877	3.5	△427,302
	예비비	1,388,143	(1.2)	1,990,445	(2.0)	△602,302
기타	1,594,432	(1.5)	1,419,432	(1.5)	175,000	

4.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0.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금회추경안	
합 계	9,209,790	100.0	8,307,316	100.0	902,474	
세 입	지 방 세	0	0.0	0	0.0	0
	세 외 수입	5,254,790	57.1	4,352,316	52.4	902,474
	경상적세외수입	1,773,870	(19.3)	1,310,827	(15.8)	463,043
	임시적세외수입	3,480,920	(37.8)	3,041,489	(36.6)	439,431
	지 방 교 부 금	0	0.0	0	0.0	0
	조 정 교 부 금	0	0.0	0	0.0	0
	보 조 금	3,608,000	39.2	3,608,000	43.4	0
	국고보조금	2,882,400	(31.3)	2,882,400	(34.7)	0
	도비보조금	725,600	(7.9)	725,600	(8.7)	0
	지 방 채	347,000	3.8	347,000	4.2	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0.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금회추경안	
합 계	9,209,790	100.0	8,307,316	100.0	902,474	
세	경 상 예 산	1,123,824	12.2	1,141,494	13.7	△17,670
	인 건 비	95,480	(1.0)	115,108	(1.4)	△19,628
	경상적경비	1,028,344	(11.2)	1,026,386	(12.3)	1,958
	사 업 예 산	6,790,715	73.7	5,943,465	71.5	847,250
	보조사업	3,608,000	(39.2)	3,608,000	(43.4)	0
	자채사업	3,182,715	(34.6)	2,335,465	(28.1)	847,250
출	채 무 상 환	1,023,238	11.1	1,023,238	12.3	0
	지방채상환	1,023,238	(11.1)	1,023,238	(12.3)	0
	예 비 비 등	272,013	3.0	199,119	2.4	72,894
	예 비 비	260,821	(2.8)	187,175	(2.3)	73,646
	기 타	11,192	(0.2)	11,944	(0.1)	△752

5. 계속비 사업조서 : 2000. 당초예산과 같음

6. 채무부담 행위조서 : 해당없음

7. 명시이월 사업조서 : 2000. 당초예산과 같음

8. 2000. 보조(국고, 도비, 양여금)사업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고보조	도비보조	도분양여금	군분양여금
경 정 예 산 안	계	68,168,076	36,122,465	13,218,844	5,447,565	13,379,202
	국 비	22,169,361	22,169,361	0	0	0
	도 비 (양여금)	25,821,098	3,827,309	6,795,448	3,972,875	11,225,466
	군 비	20,177,617	10,125,795	6,423,396	1,474,690	2,153,736
기 정 예 산 안	계	57,900,030	32,704,068	10,134,828	4,103,237	10,957,897
	국 비	21,033,891	21,033,891	0	0	0
	도 비 (양여금)	21,507,210	3,625,075	4,908,228	3,544,010	9,429,897
	군 비	15,358,929	8,045,102	5,226,600	559,227	1,528,000
증 감	계	10,268,046	3,418,397	3,084,016	1,344,328	2,421,305
	국 비	1,135,470	1,135,470	0	0	0
	도 비 (양여금)	4,313,888	202,234	1,887,220	428,865	1,795,569
	군 비	4,818,688	2,080,693	1,196,796	915,463	625,736

9.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1.94% 증가한 1,194억4,032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2.03% 증가한 1,102억3,05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9% 증가한 92억979만원 규모임.
-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규모에서는 91억4,742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규모에서는 35억6,295만8천원이 증가하였음.
-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개요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부 경상적경비 및 채무상환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새천년을 대비한 지식, 정보, 문화 구축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 노인복지촌조성 기반시설, 치매전문 요양시설 신축 부족사업비 등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과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등 경상적경비 부문에서 불요불급한 부문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 지방재정법, 중장기재정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내에서 수지균형, 재정운영의 효율화 등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의거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10. 질의 및 답변

- 문 : 인구증가시책 추진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 답 :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산하 공무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주소를 옮겼으며, 유관기관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협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 문 : 읍면의 시설비 지원이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은 선심성의 기준이 아닌지
- 답 : 민원 등 의원, 읍면장의 건의사항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일부 읍면에서 의원,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치 못한 것은 죄송하게 되었음.

- 문 : 국외 해외연수경비 및 퇴직자 보상금 편성된 사유는
- 답 : 해외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군정을 추진키 위한 것이며, 퇴직자 보상금은 대통령지침에 의거 연금관리공단의 산출근거에 의거 98년 임용 결격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보상금임.
- 문 : 업무추진비 200% 증액사유는
- 답 : 전체 기준액(시링) 범위내이며, 당초예산대비 인근 시군에 비해 적고, 항목을 구체화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 문 :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비 내역은
- 답 : 현재까지는 관리인부임을 지급하였으나, 오광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비임.
- 문 : 군립 동부도서관의 건립계획은
- 답 : 면지역중 중·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시범으로 설치하며, 본군에서는 고성군 회화면 도유 폐천부지를 양여·불하조치 등으로 동부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임.
- 문 : 고성 송학고분군 정비사업비 내역은
- 답 : 현재까지는 지표조사하였으나 향후 정밀조사발굴에 따른 예산임.
- 문 : 몽골공룡화석탐사 경비 지원내역은
- 답 : 몽골 10주년기념 행사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전시협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월례회시 보고된 내용임.
- 문 :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향후 사업비 확보계획은
- 답 : 총예산 50억이 소요되며, 마사기금 11억, 문화관광부 국비지원 20억, 1999년도에 확보된 도비 4억4천만원, 2001년도에 도비 5억 확보 전망으로 총 40억 확보 예상되므로 건립가능
- 문 :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변경된 사유는
- 답 : 국비는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는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변경.
- 문 : 당항포 가족호텔 처분을 경정장 설치시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경정장 설치도 불투명하여 장기간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 답 : 현재 23억정도 예정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물가액이 계속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기 처분조치토록 하겠음.
- 문 : 향토음식 축제 행사비내역은.
- 답 : 금년 10월 도품평회 개최시 우리군의 향토음식(한과) 출품비임.

- 문 : 치매요양시설 부족사업비 사유는
- 답 : 99년 총괄계약으로 14억5천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시 2억8천5백만원 부족금액임.
- 문 : 배둔어린이집 퇴직금 지급사유는
- 답 : 통영지방노동사무소 지시에 의거 지급하게 되었음.
- 문 : 보건소 이전으로 군민의 활용도는
- 답 : 처음에는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현재는 교통 등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시설확장등을 고려 현재 위치가 장래 효율성이 높은 지역임.
- 문 : 당항포 묘지이장 공고는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해당되는데
- 답 : 현재 묘지 24기로 대부분 당항포조성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법상 강제 분묘이장은 불가능 실정이나 공고, 분묘소유자와 협의 등으로 분묘이전토록 하겠음.

11. 토 론 : 없음

12. 심사결과

가.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군수제출안	심 사 사 항		수 정 안	비 고
		삭 감 액	증 액		
계	76,977,407	0	0	76,977,407	
일반회계	71,616,446	0	0	71,616,446	
특별회계	5,360,961	0	0	5,360,961	

나.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군수제출안	심 사 사 항		수 정 안	비 고
		삭 감 액	증 액		
계	52,045,231	308,200	308,200	52,045,231	
일반회계	46,684,270	308,200	308,200	46,684,270	
특별회계	5,360,961	0	0	5,360,961	

※ 증액 308,200천원

- 한해대책농업기반조성비 : 200,000천원(3110-3111-220-401-01 시설비)
- 예비비 : 108,200천원(5410-5411-410-801 예비비)

다. 예산삭감 및 수정현황

- 세입부분 : 변동없음
- 세출부분 : 308,200천원을 삭감하여 한해대책 농업기반조성비 200,000천원, 예비비 108,200천원에 증액조치 하였음.

덧붙임 :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증·감액조서 1부.

2000年度 第1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削減額調書

總 務 委 員 會

2000年度 第1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削減額調書

一般會計
歳出部門

(單位：千圓)

科 目				郡守提出 豫算案	修 正 案		修 正 豫算額	修 正 内 譯
項	細項	細細項	目		減 額	増 額		
1220	1221	120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460	1,200		47,260	○ 출향인사 초청간담회
					2,800			○ 추곡수매장 격려
					2,000			○ 공룡 실물대전 행사추진
					2,000			○ 자매결연사업 추진
					1,200			○ 행정동우회 간담회
					2,000			○ 각종 봉사단체 격려
2110	2112	120	307-02 민간포는 사회단체경상보조	172,973	170,000		2,973	○ 몽골 공룡화석 탐사경비 지원
2120	2121	210	401-02 감리비	103,000	103,000		0	○ 문화체육센터 감리비
			401-03 시설부대비	5,000	5,000		0	○ 문화체육센터 시설부대비
2310	2312	210	307-02 민간포는 사회단체경상보조	34,000	14,000		20,000	○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000年度 第1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削減額調書

一般會計
歳出部門

(單位：千圓)

科 目			郡守提出 豫算案	修 正 案		修 正 豫算額	修 正 内 譯
項	細項	細細項		減 額	増 額		
3220	3221	120	35,684	3,000		32,684	○ 웰컴투코리아 회원가입비
3220	3222	220	2,000	2,000		0	○ 당항포관광지 매장 토지이장 공고료
계				₩308,200			

2000年度 第1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増額調書

總 務 委 員 會

2000年度 第1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増額調書

一般會計
歳出部門

(單位：千圓)

科 目				郡守提出 豫算案	修 正 案		修 正 豫算額	修 正 内 譯
項	細項	細細項	目		減 額	増 額		
3110	3111	220	401-01 시설비			200,000	200,000	○ 한해대책 농업기반조성비
5410	5411	410	801 예비비	1,388,143		108,200	1,496,343	○ 예비비
계						₩308,200		